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wavy lines in shades of purple, green, blue, yellow, and pink. Scattered throughout are several geometric elements: a cluster of grey 'x' marks in the top left, a cluster of grey 'x' marks in the middle right, and five colored diamonds (orange, blue, pink, green, and red) positioned around the central text. White L-shaped corner brackets are located in the top left and bottom right corners.

디자인권 및 상표권

한국발명진흥회 엄성희 책임전문위원

디자인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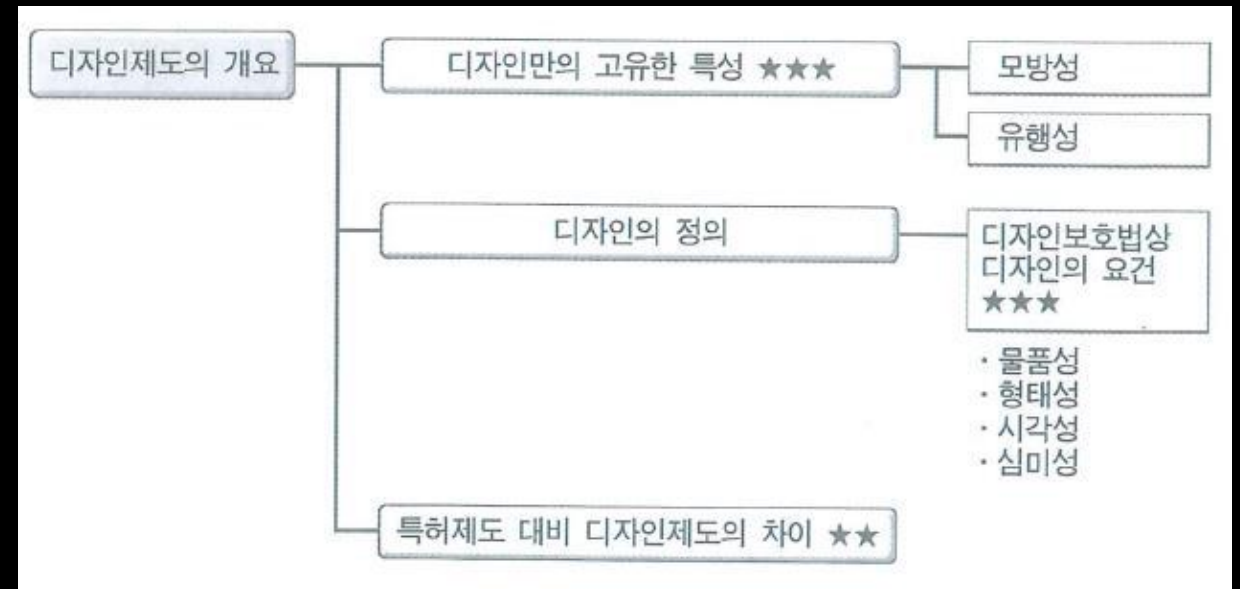
학습개관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특허제도와 비교하여 디자인제도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학습포인트

디자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본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를 알아본다.
특허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디자이너만의 고유한 특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디자인은 아이디어에 비해 모방이 쉽다.

비밀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표시제도 등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여 수명이 짧다.

일부심사등록제도, 우선심사신청제도



디자인은 발명에 비해 권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유사 영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디자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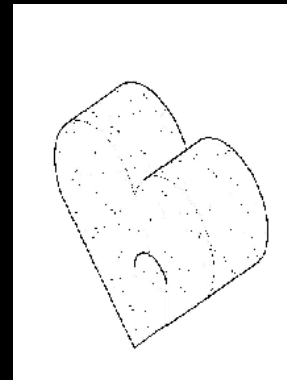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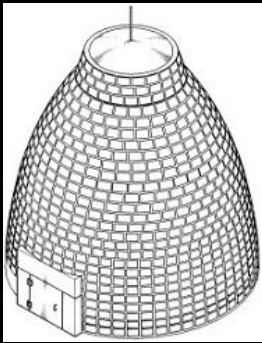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 정의 관한 법 규정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물품성

-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



디자인의 정의



형태성

- 형상 · 모양 · 색채 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
-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 안됨.
-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
-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시각성

-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
- 시각 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하나의 단위
-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 다만,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음. Ex) 발광다이오드

디자인의 정의



형태성

- 형상 · 모양 · 색채 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
-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 외에는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 안됨.
-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
-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시각성

-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
- 시각 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하나의 단위
-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 다만,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음. Ex) 발광다이오드

특허제도 대비 디자인제도의 차이



특허제도와 달리 존재하는 디자인제도

일부심사제도
유사 개념과 관련 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청구제도
출원공개신청제도
부분디자인제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특허제도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제도

심사청구제도
국내우선권 제도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정정청구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
존속기가 연장등록 및 갱신제도

디자인등록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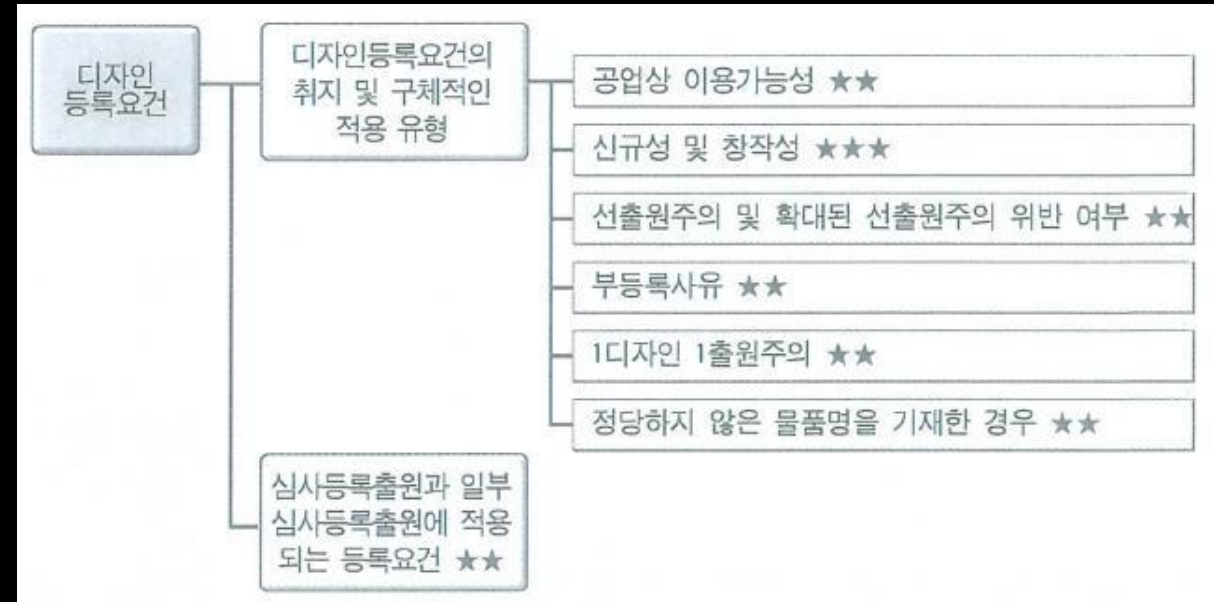
학습개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구분
디자인등록요건에 대한 이해 매우 중요



학습포인트

디자인등록요건의 취지 및 구체적인 적용 유형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의 등록요건 유형



디자인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
-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
- 양산이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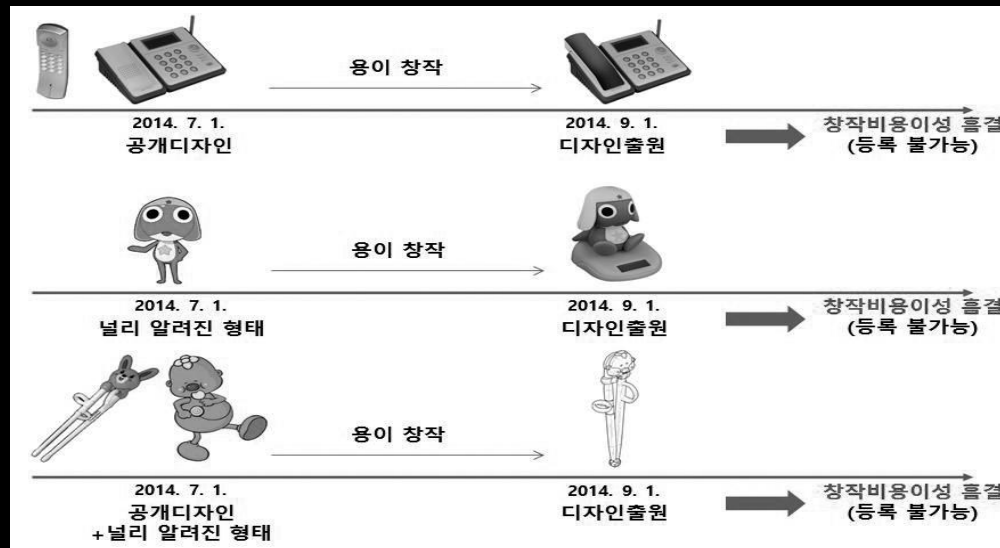


디자인등록요건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
-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 또는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 하게 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디자인이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고 시 . 분 . 초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공지를 이유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행물에 게재된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전체적인 형태를 쉽게 알 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카탈로그의 경우에 일단 제작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포된 것으로 본다



디자인등록요건



• 디자인의 유사 판단

-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 외관을 일반수요자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 해당 디자인의 참신성과 심미감에 따라 달리 판단.

• 디자인 용이창작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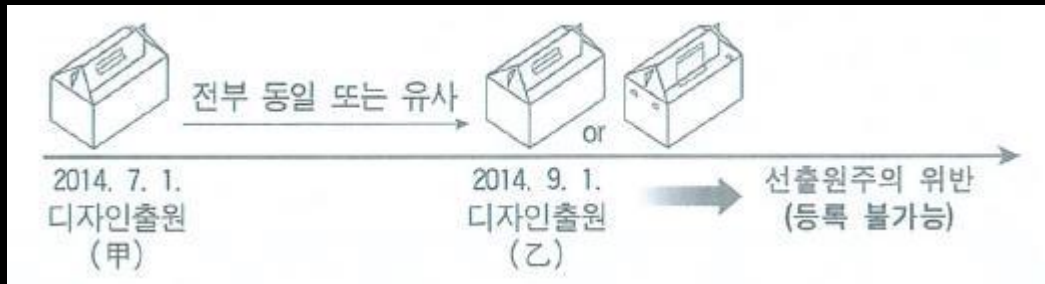
-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출원 전 공개디자인 또는 국내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창작 수준이 낮은 경우.

디자인등록요건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디자인보다 먼저 출원되어야 한다.



① 선출원주의의 적용 유형

유형	선출원디자인(A)	후출원디자인(A, A')
1	완성품	완성품
2	부품	부품
3	한 벌 물품	한 벌 물품
4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 A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인의 후출원 A, A'디자인은 A디자인이 등록되거나 협의불성립에 의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선출원주의를 적용한다.

※ $A=A$, $A \approx A'$ 의 관계임

②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적용 유형

유형	선출원 디자인(a를 포함하는 A)	후출원 디자인(a, a')
1	완성품	부품
2	완성품	부분디자인
3	부품	부분디자인
4	한 벌 물품	구성 물품
5	부분디자인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요건



부등록사유

국기, 국장(國章), 군기,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또는 이들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



디자인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1)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 (2)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3) 저속, 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 (4)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 (5) 저명한 타인의 초상.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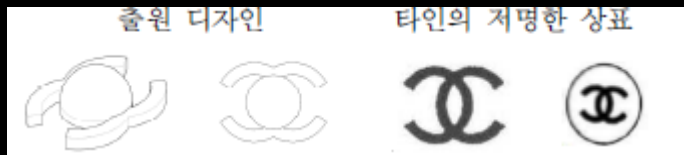
디자인등록요건



부등록사유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에 사용되는 상표 등을 디자인의 주된 구성요소로 할 경우에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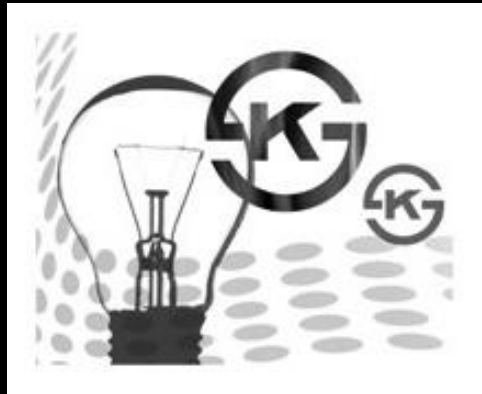
디자인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물품의 기능이란 그 물품이 발휘하는 기술적인 작용 및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에 화체된 형태가 나타내는 미감과는 무관하므로 물품의 형태에서 발휘되는 심리적, 시각적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요건



1디자인 1출원주의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디자인보호법 제40조)
해석상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등록될 수 없음이 원칙



정당하지 않은 물품명을 기재한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적절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에 적용되는 등록요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결정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가방 등 신변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제11류(보석·장신구),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관련디자인심사등록요건 제외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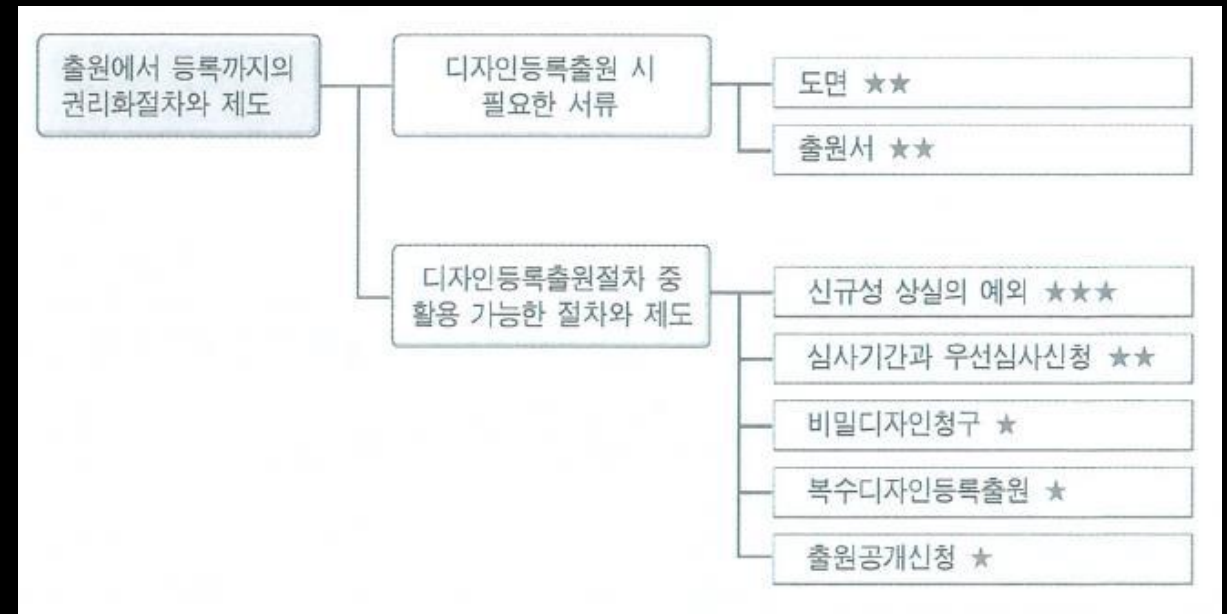
학습개관

디자인등록출원 및 절차에 대하여 이해



학습포인트

디자인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본다.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중 출원인이 활용가능한 제도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도면 필수 첨부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출원서

구체적인 기재 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구분】 ☒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김충원
【특허고객번호】 4-2005-031378-7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1디자인

(【디자인의 수】)

【물품류】 제1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김창작
【특허고객번호】 4-2000-043206-9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 첨부 ☐ 미첨부

(【그 밖의 사항】 ☐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충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오령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오령 제18호 참조)

【디자인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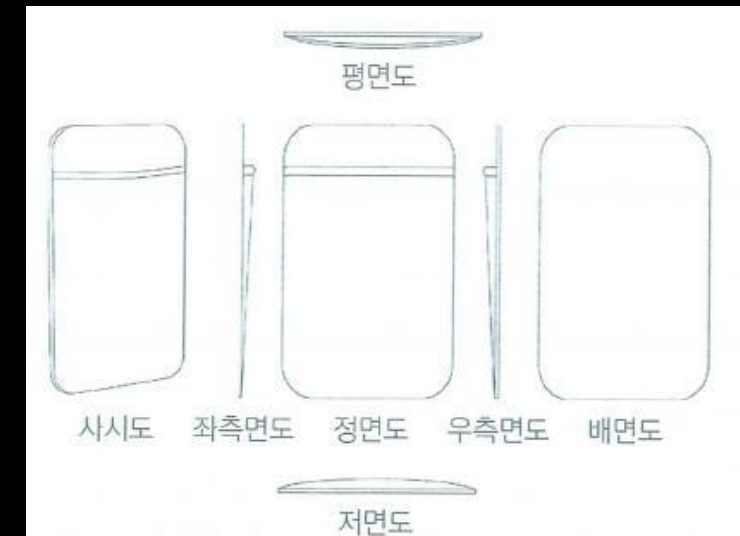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

【도면 1.1】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 절차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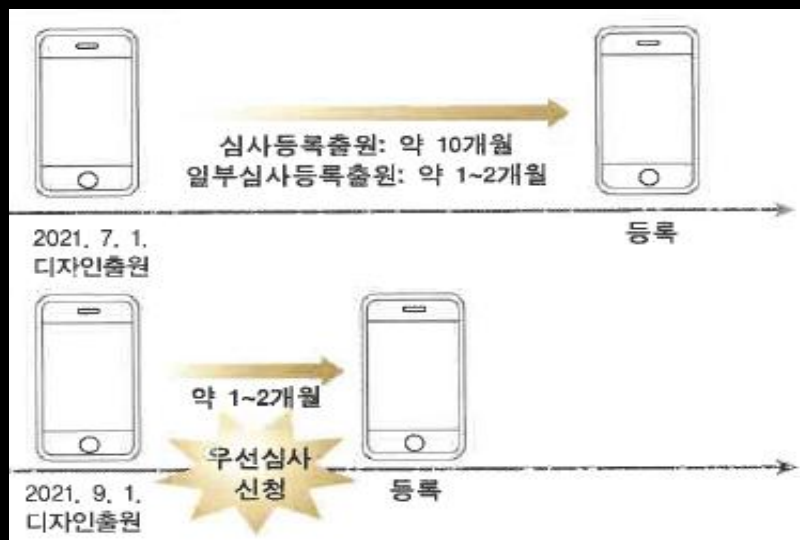


신규성 상실의 예외

자기 디자인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 하면 그 디자인의 공개는 없는 것으로 간주



심사기간과 우선심사신청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 절차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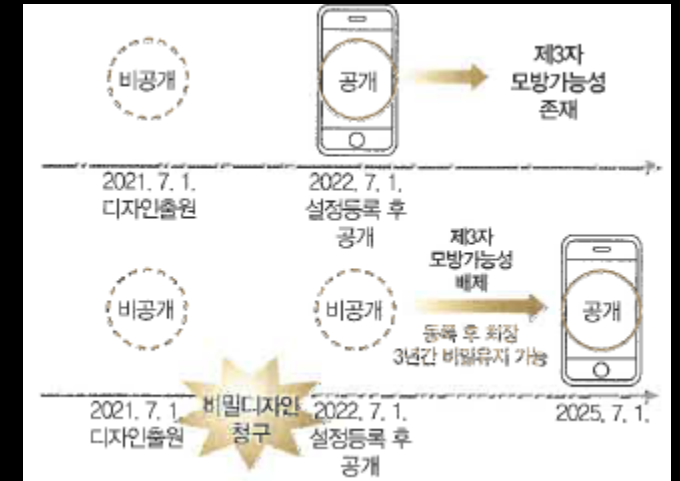


비밀디자인청구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침해자에 대한 과실 추정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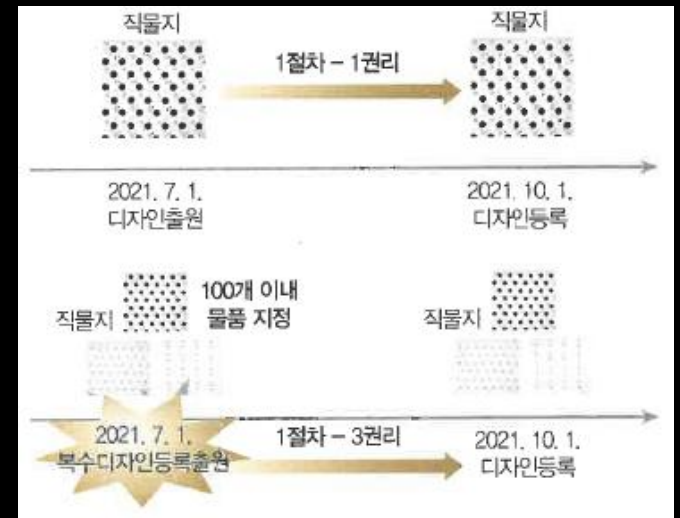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행사 시 사전 경고 등 민사상 권리 행사에 일정 제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 이내에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

절차 및 관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출원공개신청

원칙적으로 등록 전까지 출원디자인 공개하지 않음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 전이라도 출원디자인을 공개

등록전이라도 제3자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학습개관

디자인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상 각 국가별로 효력
국가별 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학습포인트

해외 디자인출원을 위한 우선권주장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해외 디자인 출원시 유의할 사항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우선권 주장이 없는 해외출원방법(우리나라를 제외한 출원)

디자인 사업화 영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인 경우 활용
각 국가별로 직접 디자인등록절차를 진행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해외출원방법(우리나라를 포함한 출원)

디자인 사업화 영역이 국내 또는 해외 국가를 포함하는 경우 활용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완료하고 해외 각 국가별로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
(우선권을 활용하는 방안)

우리나라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외 각 국가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해야 됨

우리나라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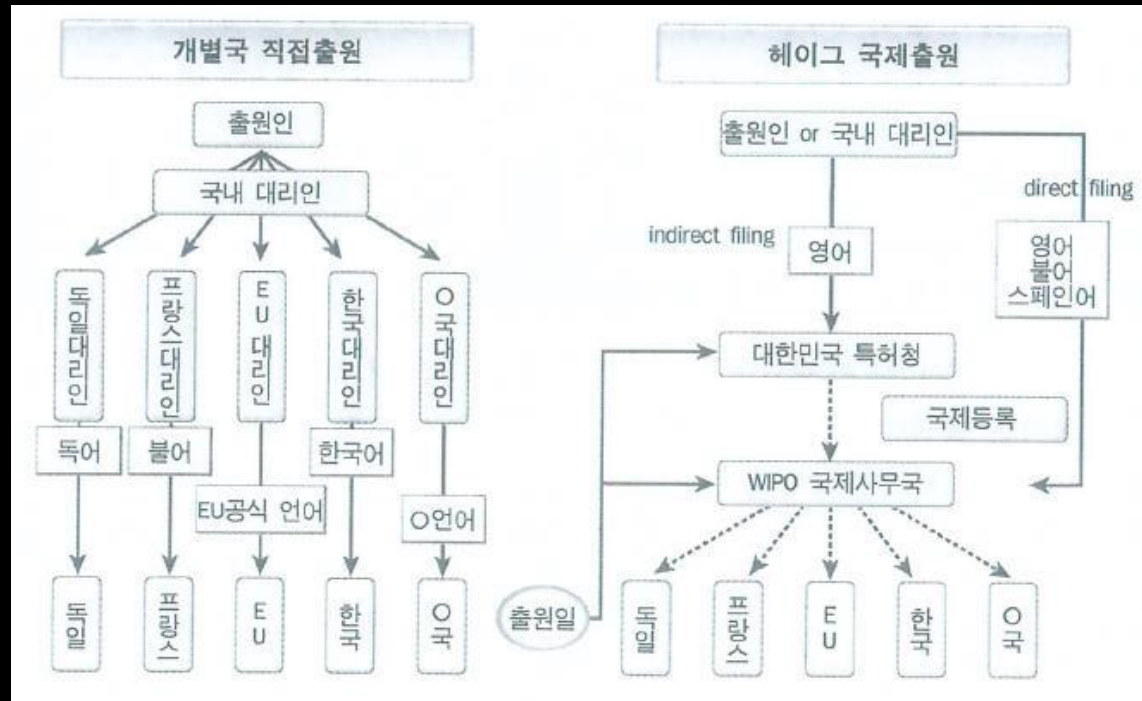
1국 출원과 2국 출원의 동일성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하나의 출원서류를 WIPO 국제사무국 직접제출하거나 특허청을 통해 제출
다수 국가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
지정국 영역에서 디자인 권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특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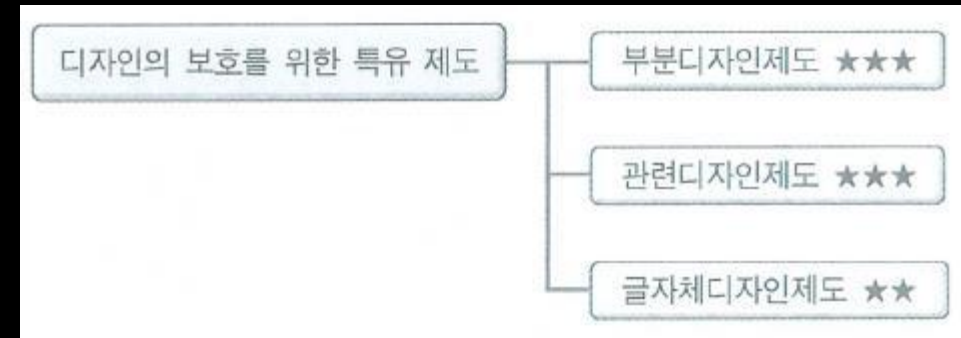
학습개관

부분디자인제도와 관련디자인 제도
글자체에 관한 보호제도



학습포인트

디자인권의 내적 강화 수단인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권의 외적 강화 수단인 관련디자인제도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호 방안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특유 제도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일부에 대한 디자인이라도 다른 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도록 창작단위를 구성한다면 디자인보호의 대상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해당 물품을 전제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디자인에 미친다.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 으로 그 이외 부분은 ‘파선’ 으로 표현하여 명확히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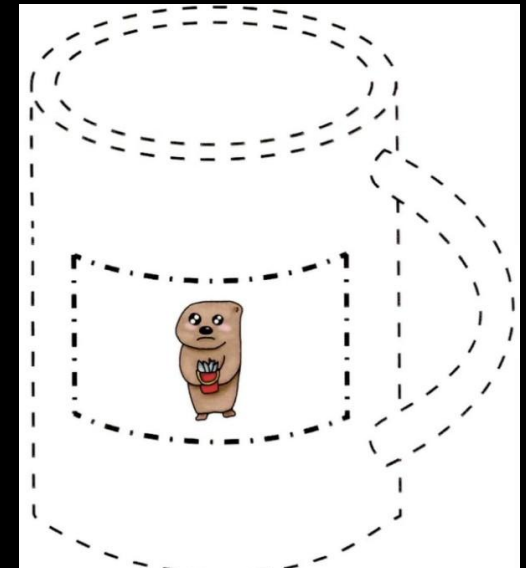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1점쇄선으로 표시하여야 함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에 색채를 달리 표현하여 구별
‘디자인의 설명’ 란에는 도면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

하나의 물품으로부터 다수의 등록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음

부분디자인에 해당하는 형태가 동일·유사하더라도 물품이 다르면 침해 성립되지 않음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특유 제도



관련디자인제도

최초 디자인을 기초로 변형된 디자인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

적용 요건

기본디자인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해야 한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특유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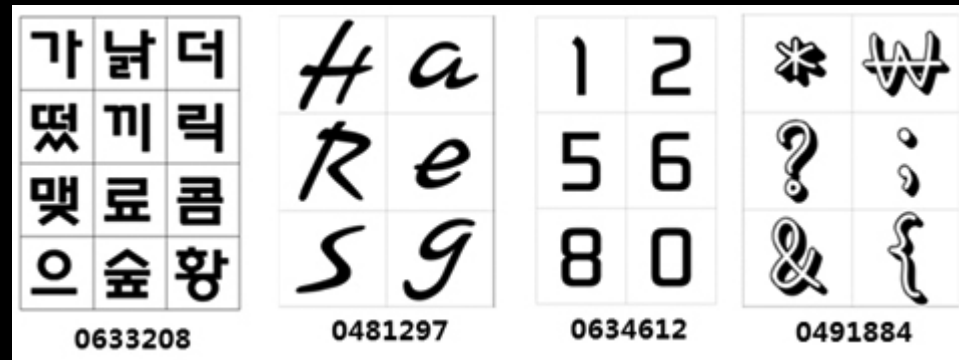


글자체디자인제도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벌의 글자꼴.

한글 · 영문자 · 기타 외국문자 · 숫자 · 특수기호 · 한자 글자체에 속하는 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권은 동일 또는 유사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글자체의 통상적인 사용 및 그 사용에 의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상표제도의 개요



학습개관

상표법의 목적과 지위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인접 개념



학습포인트

상표법의 목적과 지위를 이해
상호, 도메인이름 등 상표의 인접 개념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법의 목적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상표법의지위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 사용 권리 독점

제3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 금지

특정상표에 화체된 신용 유지

상품의 출처표시, 품질보증기능 유지(경업질서 확립)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방지(수요자 및 거래자의 불측 손해예방)

상표사용자의 상품의 품질 유지, 향상(수요자의 이익)

업무상 신용 유지와 부정경쟁 방지(건전상거래질서 확립, 산업 발전)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의 정의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의 정의

표장

상품은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표장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중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뿐만 아니라 소리 ·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상표법상의 상표

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표장의 유형에 따라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결합상표, 비시각적 상표(소리 · 냄새상표)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의 정의

표장유형

문자상표

한글, 한자, 외국어, 숫자 등

참이슬 APPLE 加樂比 カルビー

도형상표

동·식물 및 다양한 형상의 도형



색채상표

문자나 도형에 특정 색채가 추가되어
색상으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



결합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등이
결합된 상표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의 정의

표장유형

입체상표

3차원적 입체적 형상으로 상표를 구성한 상표



동작상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



비시각적 상표 (소리, 냄새)

소리상표 : Intel, MGM 등
냄새상표 : 레이저프린터의 아몬드향 토너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다른 표지

단체표장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상품의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주체가 소정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에 특징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다른 표지

증명표장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에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권자 본인이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다른 표지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증명표장권자 본인이 자기의 상품에 대해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단국대학교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의 인접 개념

상호

상인이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인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발생(사용주의)

상호는 동일한 상호가 지역을 달리하여 사용되거나 등기될 수 있고, 동일하지 않다면 유사한 상호가 같은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등기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모방을 차단하기 쉽지 않음

대웅제약



상표제도의 개요



상표의 인접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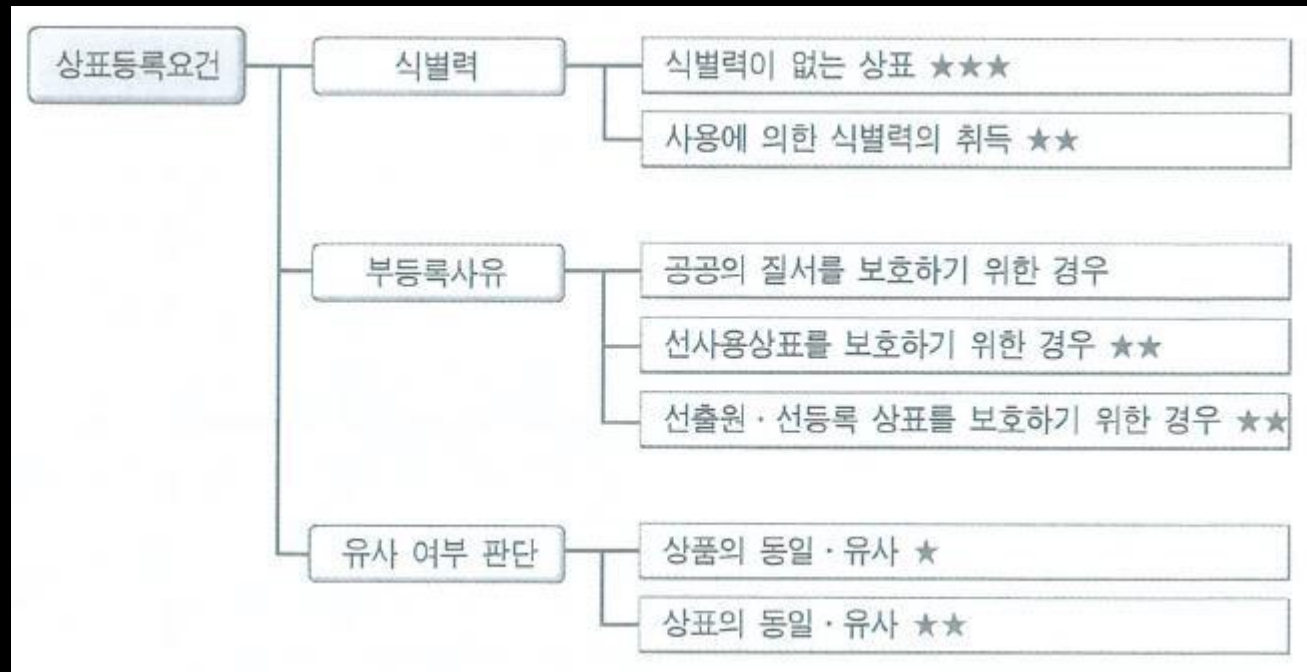
도메인 이름

컴퓨터의 IP주소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와 숫자로 표현한 것

도메인이름이 가리키는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메인이 상표와 비슷한 기능 수행하여,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받거나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출처가 혼동(부정경쟁행위 내지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있을것

상품의 보통명칭(제33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 오리온그룹 홍보실 제공>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상품의 보통명칭(제33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관용상표(제33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의 주지상표 또는 등록상표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것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그 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은 처음부터 보통명칭, 관용표장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 특정인의 등록상표였던 것이 관리소홀로 된 것도 포함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기술적 표장(제33조 제1항 제3호)

그 상품의 산지(產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품거래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자타 상품 식별력이 약함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공익상 곤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33조 제1항 제4호)

상품의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당해 지역과의 관계를 혼동하게 할 위험이 있고 특정인에게 그 산지 또는 지리적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

판단 기준 시점은 출원상표 등록 여부 결정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 기호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상표 등록 가능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된 것 (제33조 제1항 제5호)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姓)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등
예) 리, 윤씨농방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33조 제1항 제6호)

E TIRE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 제1항 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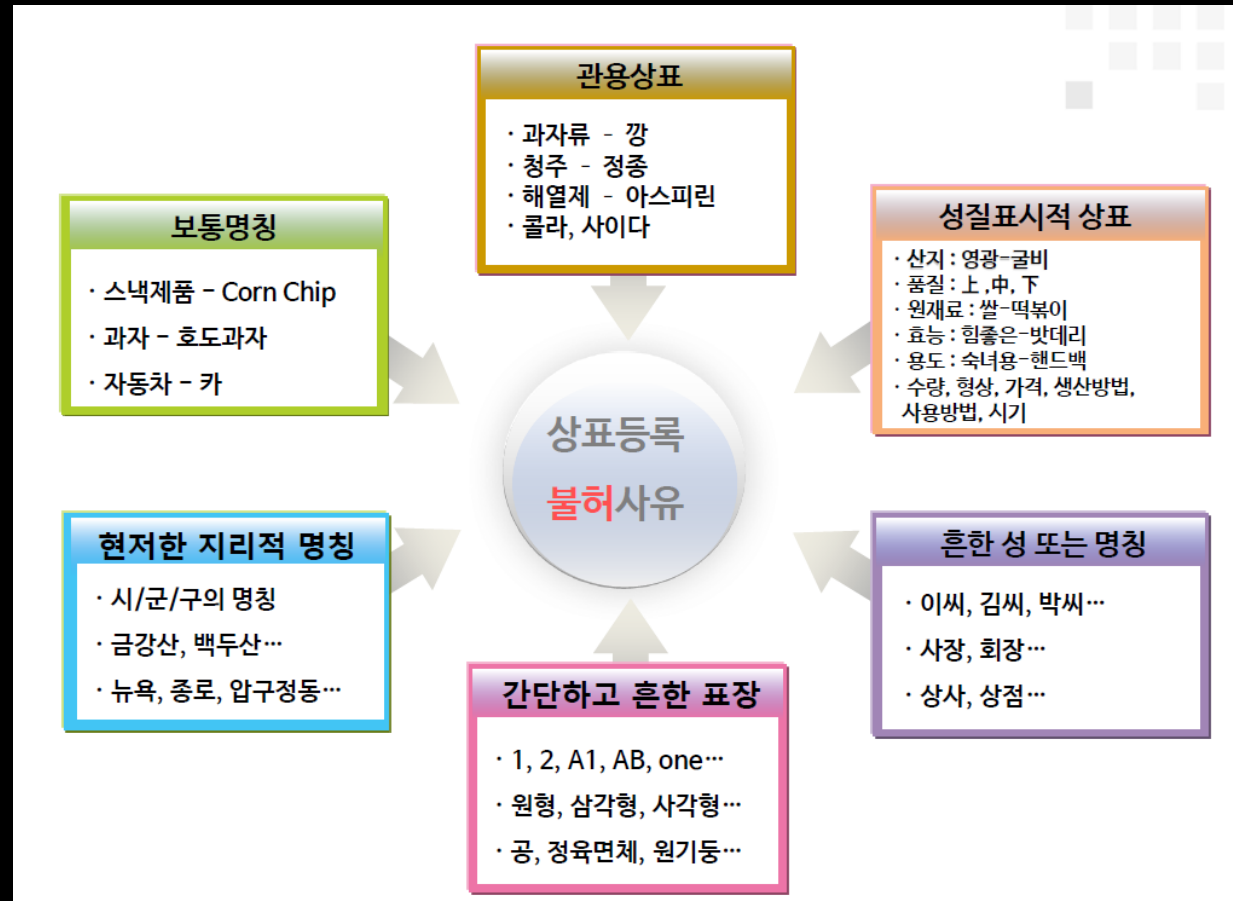
IMPOSSIBLE IS NOTHING

JUST DO IT

상표등록요건



상표등록 불허사유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의 판단

상표의 식별력은 원칙적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

식별력은 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심사단계 상표등록 출원 가부는 실제의 사용 상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식별력 판단)

식별력은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4호 내지 제6호)에는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나 거래자로 한정할 필요 없음

상표등록요건



식별력이 없는 경우의 효과

상표권 설정등록 前

- 상표권 등록요건 흠결 → 거절결정

상표권 설정등록 後

- 등록 前 식별력 상실 → 무효사유 → 언제든지 무효심판 청구 가능
- 등록 後 식별력 상실 → 무효사유 → 무효심판 청구 가능 → 식별력 획득시 회복가능
-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 → 그 부분제외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
- 타인이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 없는 표장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상표등록요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예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제33조 제2항)

반복 사용의 결과 수요자 사이에서 식별력을 획득하면 등록적격을 가짐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실제 사용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
우리나라 전역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을 획득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요건



부등록사유(제34조)

1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훈장, 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2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3	국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6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7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	타인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표등록요건



부등록사유(제34조)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에서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5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권리자와의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자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상표등록요건



상품의 동일 · 유사와 상표의 동일 · 유사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의 신속성,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군코드를 참고하여 상품의 동일 · 유사를 판단

상표의 유사

-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칭 호

TYRE PLUS ⇔ TIRE PLUS
KOLON ⇔ KOULONG

외 관

POCA CHIP ⇔ POTACHIP
MYPROCEL ⇔ MYPRODOL

관 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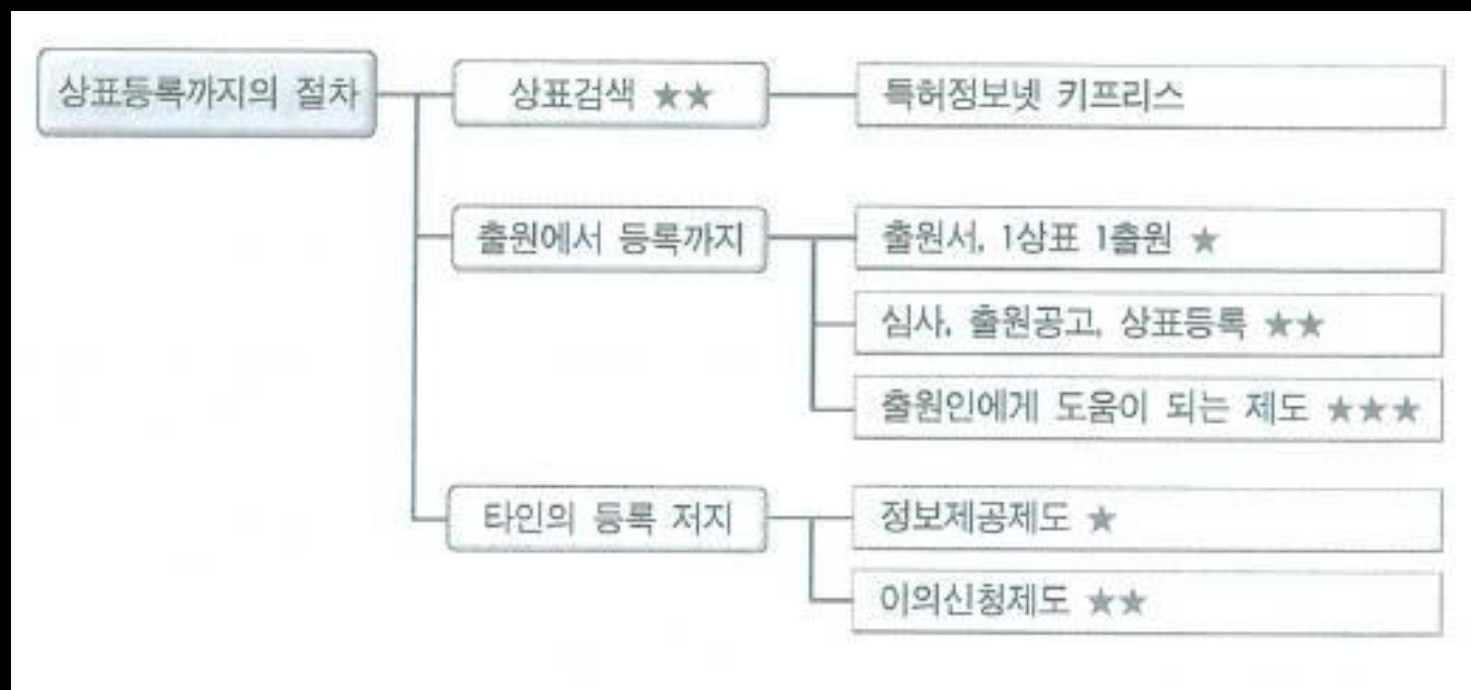
임금 ⇔ 王, KING
평화 ⇔ PEACE

결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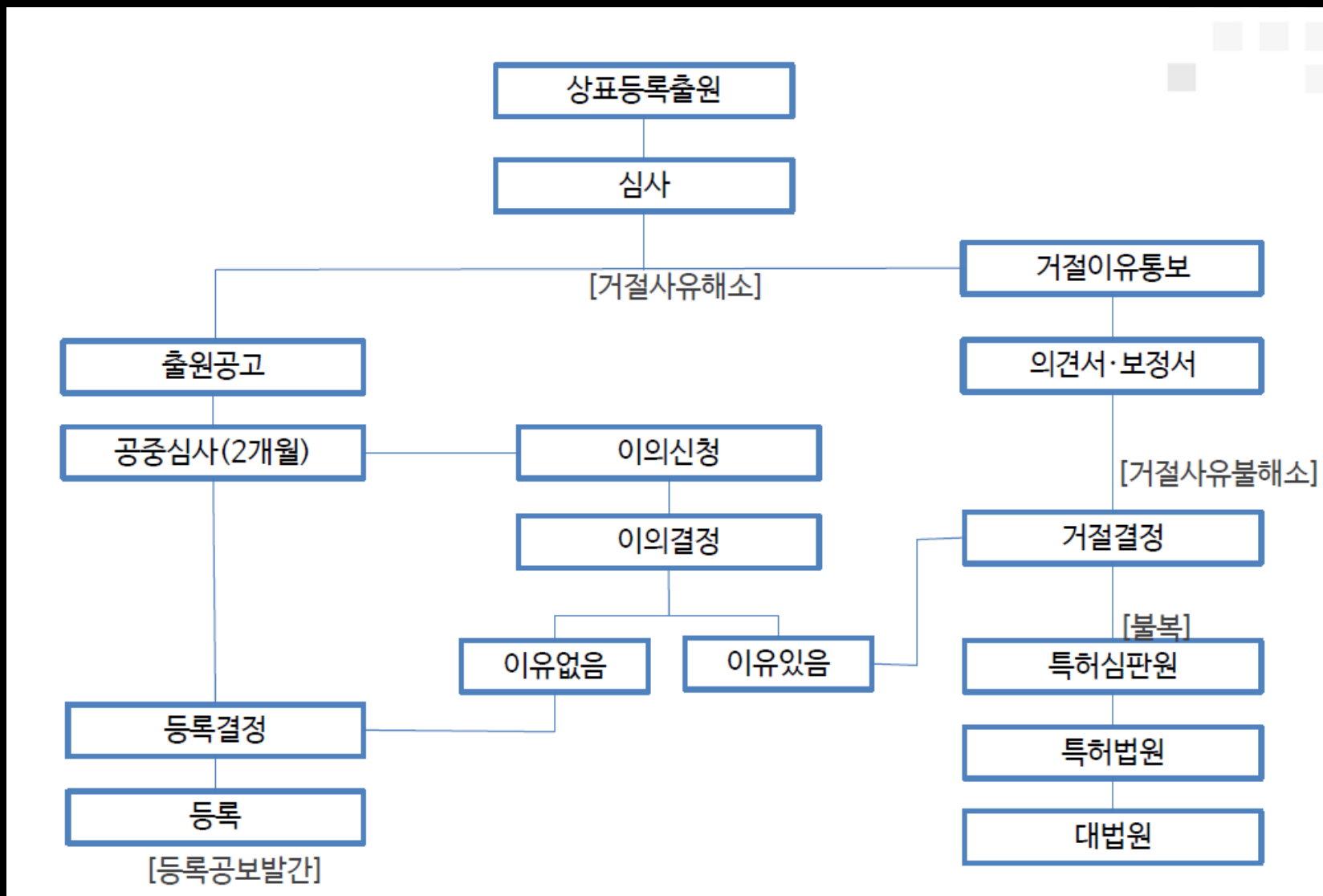
STAR ⇔ NEW STAR
NAWOO ⇔ NAWOO TECH

식별력
유무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 절차와 제도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상표등록출원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허청(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

(앞쪽)

【출원 구분】 ☒ 상표등록출원 ☐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상표등록 분할출원
☐ 상표등록 변경출원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재출원출원

【권리 구분】 ☒ 상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입무표장

(【참조번호】)

【출원인】 **김출원**
 【성명(명칭)】 **김출원**
 【특허고객번호】 **4-2018-000123-4**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출원인,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상품류】 **제 25류**
 【지정상품】 **스커트, 넥타이, 양말**

(【출원인】)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출원 시의 특허주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서류의 제출생략(지리적 표시만 해당)】)
☐

【상표 유형】 ☐ 일반상표 ☐ 입체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홀로그램상표 ☐ 동작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 소리상표 ☐ 냄새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도면(사진)의 개수】)
 (【상표의 설명】)
 (【상표의 시각적 표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김출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14호 참조)
 【출원료】 **1 개류 72,000 원**
 (【지정상품 가산금】 개 상품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6호 참조)

【상표전본】

※ 견본을 가로, 세로 8mm이내의 크기로
만들어 위 시각형 인에 부착하거나 직접
기재하십시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보정과 요지변경

(1) 보정

보정은 상표등록출원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실체적인 내용이 불비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하자나 불비를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절차보정은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② 실체보정은 출원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상표나 지정상품을 삭제·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보정은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과 송달 후에 보정의 시기와 범위, 보정 위반 시의 조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정이 적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정된 내용으로 출원된 것으로 취급된다. 시기를 위반하여 제출된 보정서는 반려되며, 보정이 요지변경이라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요지변경

보정에 의해서 상표 또는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권리범위가 확장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확장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상표법 제16조).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

-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② 오기의 정정
- ③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 ④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출원의분할

출원인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 할 수있다

출원의변경

- ① 상표등록출원
- ② 서비스표등록출원
- ③ 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은 제외)
- ④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출원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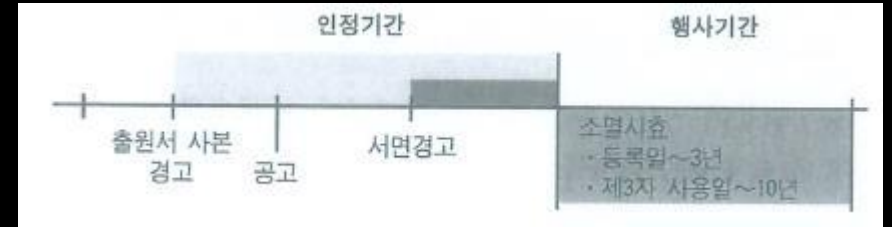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손실보상청구권

- ① 상표등록 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 ②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 된 때
- ③ 상표등록 이 된 후에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때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제1국에 출원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제2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제2국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한다.

특허와 실용신은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디자인과 상표는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증명 서류 제출

출원시 특허로 박람회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 소급효를 인정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 제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권리화절차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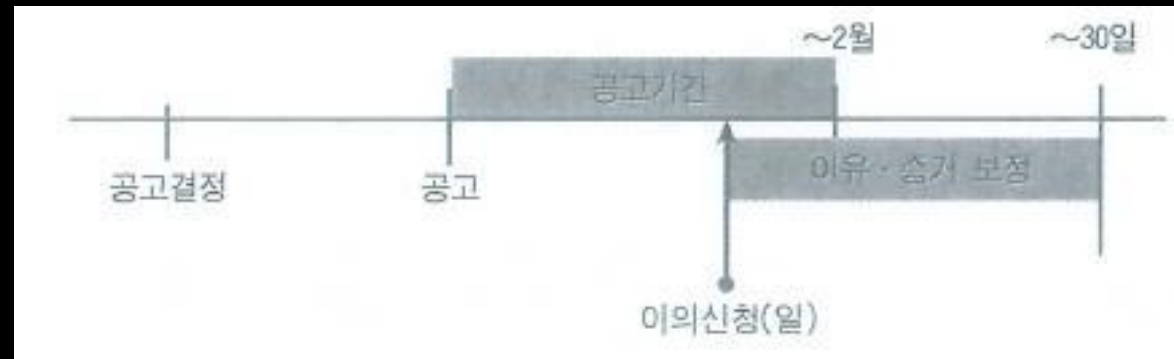


타인의 상표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정보제공제도

상표등록의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표등록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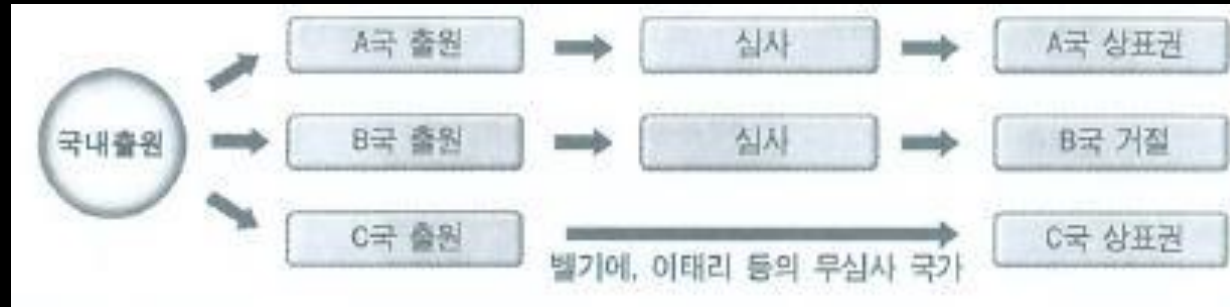


상표의 국제적 보호



해외출원 루트

개별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예상 문제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삼각형, 원기둥 그 자체, 유명한 자동차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자동차 원구 등은 디자인보
호법상 () 품격로 등록받을 수 없다.

- ① 신규성 ② 창작비용이성
③ 진보성 ④ 공업상 이용가능성
⑤ 선행위주의

다음 중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모두 몇 개인가?

- ㉠ 가방(제3류) ㉡ 신발(제2류)
㉢ 피자(제1류) ㉣ 직물(제5류)
㉤ 애완견용 집(제30류) ㉦ 귀걸이(제11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디자인등록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
- ③ 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모양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
- ④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 아니어야 한다.
- ⑤ 디자인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규정된 디자인보호법상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②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③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④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⑤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는?

- ①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② 비밀디자인제도
③ 심사청구제도 ④ 일부심사제도
⑤ 관련디자인제도

예상 문제

다음 설명은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의 실시 준비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면 보호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의 내용을 공고하지 않는다.

- ① 부분디자인제도 ② 관련디자인제도
- ③ 비밀디자인제도 ④ 복수디자인등록제도
- ⑤ 동적디자인제도

다음 중 디자인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물품성 ② 형태성
- ③ 시각성 ④ 심미성
- ⑤ 진보성

다음 중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도면에는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한다.
- ④ 부분디자인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도면에는 디자인대상이 되는 물품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다음 중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첨부 여부는 방식심사대상이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 시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는 실체심사대상이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 시 3D 도면 제출이 가능하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 시 사시도는 필수도면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한글, 영문자, 기타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청장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보완기간 부여 후 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반려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거절결정한다.
- ④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각하결정한다.
- ⑤ 특허청장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예상 문제

다음 중 한국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 ① 볼펜의 형상 ② 자전거의 외관
③ 패션 의류 ④ 개량된 형태의 장미
⑤ 글자체

다음 중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 ③ 관련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다.
- ④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원에 관한 디자인을 특정한다.
- ② 심사의 대상을 특정한다.
- ③ 보정 및 분할의 대상을 특정한다.
- ④ 출원인의 정보를 특정한다.
- ⑤ 권리범위를 특정한다.

다음 중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본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만 이용할 수 있다.
- ③ 독자적인 무효심판 대상이다.
- ④ 기본디자인권과 별개로 존속기간이 종료된다.
- ⑤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에 관한 것이며 모방이 용이하므로 회피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모두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 ㉡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의 불실시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
- ㉢ 디자인보호법에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가 존재한다.
-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 ㉤ 디자인보호법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 ① ①, ②
④ ②, ③
⑤ ③, ④
⑥ ④, ⑤
⑦ ⑤, ⑥
⑧ ⑥, ⑦
⑨ ⑦, ⑧
⑩ ⑧, ⑨
⑪ ⑨, ⑩
⑫ ⑩, ⑪
⑬ ⑪, ⑫
⑭ ⑫, ⑬
⑮ ⑬, ⑭
⑯ ⑭, ⑮
⑰ ⑮, ⑰
⑱ ⑰, ⑱
⑲ ⑱, ⑲
⑳ ⑲, ⑳
㉑ ⑳, ㉑
㉒ ㉑, ㉒
㉓ ㉒, ㉓
㉔ ㉓, ㉔
㉕ ㉔, ㉕
㉖ ㉕, ㉖
㉗ ㉖, ㉗
㉘ ㉗, ㉘
㉙ ㉘, ㉙
㉚ ㉙, ㉚
㉛ ㉚, ㉛
㉜ ㉛, ㉜
㉝ ㉜, ㉝
㉞ ㉝, ㉞
㉟ ㉞, ㉟
㊱ ㉟, ㊱
㊲ ㊱, ㊲
㊳ ㊲, ㊳
㊴ ㊳, ㊴
㊵ ㊴, ㊵
㊶ ㊵, ㊶
㊷ ㊶, ㊷
㊸ ㊷, ㊸
㊹ ㊸, ㊹
㊺ ㊹, ㊺
㊻ ㊺, ㊻
㊼ ㊻, ㊼
㊽ ㊼, ㊽
㊾ ㊽, ㊾
㊿ ㊾, ㊿

예상 문제

다음 중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 ①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 ②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 ③ 연구를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 ④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그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 ⑤ 통상적인 타자, 인쇄 과정에서 디자인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중 디자인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만이 복수디자인출원이 가능하다.
- ②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도 출원공개가 가능하다.
- ③ 디자인 심사등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비밀디자인청구가 가능하다.
- ⑤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상 문제

다음 중 상표권과 그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횟수는 10회로 제한되어 있다.
- ④ 상표권은 상표출원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의 유사표장 사용이 등록상표의 효력제한 사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는?

- ① 자기의 성명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③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는 경우
- ④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⑤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

다음 중 상표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
- ② 단순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
- ③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 상표
- ④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 ⑤ 상품의 관용적인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

다음 제시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은?

- | | |
|---------------------|-------------------|
| • ASPRIN(해열제) | • 나일론(직물) |
| • caffe latte(커피음료) | • foundation(화장품) |

- ① 업무표장권
- ② 상표의 보통명칭화
- ③ 진정상품 병행수입
- ④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 ⑤ 단체표장권

상표등록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지정상품이 동종상품임을 전제로 한다.)

- ① 타인의 선통특상표와 유사한 상표출원
- ② 자기의 선통특상표와 유사한 상표출원
- ③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출원
- ④ 주지된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출원
- ⑤ 저명한 타인의 선사용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표출원

예상 문제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을 설정해 주어 일정 조건에서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① 실시권 ② 상표권 ③ 사용권
- ④ 법정실시권 ⑤ 질권

다음 중 갱신등록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은?

-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디자인권
- ④ 상표권 ⑤ 저작권

다음 중 상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1년간 동일·유사한 상표의 출원이 금지된다.
- ② 상표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표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반드시 한 가지 종류의 상품만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 ④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 ⑤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출원인에 의한 보정만이 허용된다.

다음 중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등록출원은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하나의 출원서에는 하나의 상표만 적어야 되지만, 상품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 ③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적는 것도 가능하다.
- ⑤ 상표등록출원 시에도 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②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이다.
- ④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정식 법적 대응 전 침해경고장 등을 발송할 수 있다.
- ⑤ 상표법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국내에서 유명성을 취득하였다면, 그 유명성을 근거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상 문제

상표권 침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차례로 기재된 것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 이하의 징역 또는 ()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6개월, 5천만 ② 1년, 1억 ③ 3년, 2억
④ 5년, 1억 ⑤ 7년, 1억

원칙적으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상표권 침해죄 ㉡ 특허권 침해죄
㉢ 디자인권 침해죄 ㉣ 실용실안권 침해죄
㉤ 저작권 침해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물품성이 인정되는 물품의 개수는?

- ㉠ 투명한 용기에 담겨 형상과 색채가 특정될 수 있는 칵테일 음료
㉡ 형상이 연속하는 털실
㉢ 각설탕
㉣ 조각 형상을 따라 만든 사탕
㉤ 나비 모양으로 접은 손수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디자인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디자인과 물품은 불가분의 관계가 원칙이다.
③ 토지에 고정되고 현장시공을 통해 제작되는 건축물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④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무체물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등록출원 중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관련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련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따라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뿐만 아니라 단독디자인으로도 등록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출원일 이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④ 기본디자인이 없더라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필요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하나의 물품 중 핵심적인 부분을 보호받는 제도이므로, 하나의 물품 중 핵심적인 부분이 2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② 양말의 뒤꿈치 부분은 물품은 아니므로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③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은 반드시 동일자에 출원하여야 한다.
④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선과 파선 등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⑤ 냉장고의 손잡이 부분의 형상과 자동차의 손잡이 부분의 형상이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된다.

예상 문제

다음 중 현행법상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모두 골라 나열한 것은?

- ㉠ 판화를 인쇄한 달력 ㉡ 조립가옥
㉢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

- ①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디자인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다.
② 동 종류의 것이 많을수록 유사의 폭은 좁다.
③ 잘 보이는 곳을 위주로 판단한다.
④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을 위주로 판단한다.
⑤ 기능, 내구력 등은 판단 요소가 아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갑은 의자에 관한 디자인을 하여 지난달에 있었던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갑의 디자인이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자, 현재 갑은 누군가 자신의 의자 디자인을 도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 갑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다.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원 시 전시회 출품 사실의 취지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하므로, 자료준비로 인해 출원일이 다소 늦추어지더라도 증명서류의 준비가 되면 출원해야 한다.
③ 갑은 전시회 출품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해야만 한다.
④ 가능한 빨리 출원한 후, 전시회 출품하였다는 취지를 6개월 안에 주장 및 입증한다.
⑤ 전시회 출품에 의해 신규성 상실이 되었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바 출원을 포기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들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 출원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다.
㉣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가 가능하다.
㉤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출원인은 출원공개신청을 할 수 없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이나 등록요건이 결여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골라 묶은 것은?

- ㉠ 대량생산 및 이동이 가능한 공중전화 박스
㉡ 기능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 규격화된 자동차 부품의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침성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필꽂이 디자인
㉣ 저명한 상표를 모방한 열쇠고리 디자인
㉤ 새롭게 창작된 글자꼴 디자인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다음 중 갑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제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갑은 주방 도구에 관한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품의 출시는 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갑은 제품 출시 이전에 디자인등록공보가 발행되어 경쟁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① 관련디자인제도 ② 심사청구유예제도
③ 비밀디자인제도 ④ 등록포기제도
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

예상 문제

다음은 상표의 정의이다.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여기에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 (㉢),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 ① ㉠ 식별 ㉡ 소리 ㉢ 촉각 ㉣ 출처
 ② ㉠ 연관 ㉡ 맛 ㉢ 냄새 ㉣ 성질
 ③ ㉠ 식별 ㉡ 소리 ㉢ 냄새 ㉣ 출처
 ④ ㉠ 연관 ㉡ 소리 ㉢ 촉각 ㉣ 성질
 ⑤ ㉠ 연관 ㉡ 맛 ㉢ 냄새 ㉣ 출처

다음은 상표와 상호의 비교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 상표는 문자상표인 경우에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상호는 인적 표지의 일종이고,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이다.
 ㉢ 상표 및 상호 모두 소리, 냄새 등의 비시각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상표는 등록을 받지 않고도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상표 및 상호 모두 제한 없이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A사는 '신사복'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2010년 5월에 출원하였고, 2011년 3월에 등록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2021년 3월까지이다.
 ② A사는 신사복과 유사한 여성복에 대해서는 a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B사가 a'(a와 유사함) 상표를 신사복과 유사한 여성복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④ B사가 a'(a와 유사함) 상표를 신사복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⑤ A사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은 피청구인(상표권자)이 입증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불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으로도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예상 문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 ①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
- ②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 ③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 ④ 등록상표가 유명해진 후에 타인이 무단으로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 ⑤ 적법한 권원을 가진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

甲은 식별력이 희박한 '종로학원'이라는 표장을 상호 및 상표로 선택하여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를 사용하여 온 결과 현재로서는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원업계에 널리 인식된 표장이 되었는데, 乙이 '천안종로학원'이라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등록 상태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甲이 재출원하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을 주장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 ③ 종로학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 ④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장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
- ⑤ 甲이 종로학원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바, 乙이 사용하는 천안종로학원과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포천막걸리의 '포천', 보성녹차의 '보성'과 같은 지리적 명칭(지명)에 대한 상표법상 취급으로 잘못된 설명은?

- ① 지리적 명칭 중 지정상품에 대한 '산지'를 나타내는 '산지표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지리적 명칭 중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③ 지리적 명칭이라도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⑤ 우리 상표법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뿐 아니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도 있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wavy lines in shades of purple, blue, green, yellow, and pink, creating a sense of motion and depth. Scattered throughout are several small, light gray 'x' marks and five colorful diamond shapes (green, blue, red, pink, and orange) that add to the abstract aesthetic.

THANK YOU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